



관세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아세안(인도네시아)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

1.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,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특히, 한-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시 재단·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(CTC+SP),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(SP)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, 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·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협 정	의류 및 의류 부속품(61류 및 62류)의 PSR	비 고
한-아세안 FTA	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. 2단위 세번변경기준 + 가공공정기준 (재단·봉제) 2. 역내가치포함비율 40% 이상	-
한-싱가포르 FTA	2단위 세번변경기준 + 가공공정기준 (재단·봉제)	-
한-베트남 FTA	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. 2단위 세번변경기준 2. 역내가치포함비율 40% 이상	가공공정 삭제 22.8.1. 개정
RCEP	2단위 세번변경기준	-
한-캄보디아 FTA	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. 2단위 세번변경기준 2. 역내가치포함비율 40% 이상	22.12.1. 발효 예정
한-인도네시아 CEPA	2단위 세번변경기준	발효 예정

끝.

관 세 청 장



수신자 1. 전국세관 각 과(직속기관 제외), 2. 한국관세사회회장, 3. 대한상공회의소회장(원산지증명센터), 4. 재단법인국제원산지정보원장

관세행정관

심성훈

행정사무관

전결 2022. 11. 4.

김진선

협조자

시행 국제협력총괄과-3239 (2022. 11. 4.) 접수

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 (둔산동) / www.customs.go.kr

전화번호 042-481-3206 팩스번호 042-481-3239 / sim30730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당신, 행복한 국민, 신뢰받는 관세청